

- 부산광역시시하구의회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4. 9. 9. ----- 정쌍식의원의 5인
- 나. 회 부 일 자 : 2004. 9. 9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2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04.9.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쌍식 의원)

가. 제안이유

2006. 6. 30까지 한시적으로 시범운영 실시하는 사회복지사무소의 직제 신설에 따른 소관업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으로 배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의정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으로 배정 (안 제3조 제2항 제3호 "나목"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부산광역시시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6조 및 제6조의 2에 의거 직제 신설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시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 제2항에 의한 상임위원회 배정을 당초 사회복지업무 소관 상임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 배정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의정업무 수행이 원활하다고 판단되므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